

 신안산대학교	<b>교원업적평가규정</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규정번호</td><td style="padding: 2px;">2-3-9</td></tr> <tr> <td style="padding: 2px;">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05. 8. 17.</td></tr> <tr> <td style="padding: 2px;">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24.3.20.</td></tr> <tr> <td style="padding: 2px;">책임부서/팀·계</td><td style="padding: 2px;">교무처</td></tr> </table>	규정번호	2-3-9	제정일자	2005. 8. 17.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규정번호	2-3-9									
제정일자	2005. 8. 17.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교육, 연구, 봉사의 업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시기)** ① 매 년도(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매년 1월중에 평가 한다.

② 승진 및 재임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업적에 대해 별도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015.6.18. 개정(신설)>

**제4조 (평가예외 인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업적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인 경우

2. 해외 연수, 국내·외 파견교원, 연구년 및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 2 장 심의기구

**제5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을 평가·관리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삭제> 연임할 수 있다. <2015.2.24. 개정> <2021.8.20. 개정><2023. 3. 30. 개정><2023.07.06. 개정><2024.3.20. 개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 평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

2. 교원 업적영역별 평가항목과 기준 및 점수

3. 교원업적 평가 관련규정의 개폐

4. 기타 교원업적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한다.

**제6조(교원업적평가 재심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을 시 재심요구에 대한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교원업적평가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5인 이하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심위원은 제5조의 평가위원회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재심위원 5인중 1인은 재심신청자가 추천하며 2인은 재심신청자가 속한 계열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공의 관련성을 지닌 타 계열 교원이나 외부교원으로 2인의 재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건에 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재심의.

2. 기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전원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 3 장 평가기준

**제7조(평가영역 및 정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4개의 기본 영역과 가점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6.18. 개정> <2022.4.21. 개정>

1. 교육업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활동과 학생지도 등의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연구업적은 해당 전공 학문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연구와 창작활동 등을 말한다.
3. 봉사업적은 교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교내·외에 제공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 대학발전 기여도 및 산학협동 등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4. 산학협력은 교원들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 등을 말한다.
5. 가점영역은 교원들의 대학기여활동 등에 대한 부가 점수를 말하며 평가는 총장이 한다.

<2015.6.18. 개정(신설)>

**제8조(평가기준 및 항목)** 교원업적평가의 세부 항목, 기준 및 배점은 <별표 1>의 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8조의2(평가유형)** 교원업적평가의 교육, 연구, 봉사업적의 영역별 평가항목은 공통으로 적용하고, 산학협력실적에 대하여는 교원 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트랙과 산학협력트랙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트랙으로 평가를 받는다.

② 교원업적평가 유형별 평가항목의 최대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가유형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협력	합계
연구트랙	820점	790점	360점	830점	2,800점
산학협력트랙	820점	420점	360점	1,200점	2,800점

<2015.6.18. 개정(제8조2 신설)> <2022.4.21. 개정>

**제9조(연구업적 인정환산율)** 연구업적의 평가 시 적용될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저자수	단독	2인	3인	4인이상
인정비율	100%	70%	50%	30%

### 제 4 장 평가절차

**제10조(평가절차)** ① 평가대상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업적을 소정 양식의 교원업적평가 보고서에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업적자료를 평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하여 소명 자료를 갖추어 서면으로 재심을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이를 재심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심 신청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재심신청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총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평가에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재심을 청구 받은 총장은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교원업적평가결과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포상, 교내 연구비 및 기타 인센티브 우선지원
2. 교내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을 필요로 할 때
3. 재임용, 승진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 자료 <2015.6.18. 개정(신설)>

## 제 6 장 보 칙

**제13조(비밀 유지)** 교원업적평가보고서와 업적평가위원회의 평점 심사 인정사항 등 평가 결과는 제12조의 평가결과의 활용기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업적평가기준표

### I. 교육업적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점 수 (820점)	평가기준
1. 강의	강의시간	1) 책임시수 2) 책임시수범위 미달 (시수당) 3) 책임시수 범위내에서 기본시수초과 (시수당)	30 -5 +2	50 50 ▶허가 시 예외
	강의설문 조사결과	4) 평점 × 10	·	50 ▶(1+2학기별) 평점 × 10
	강의계획서	5) 기한 내 미입력	-5	0 ▶기준점수: 0점(감점최저점수 : -5점)
	강의일수	6) 주4일 이상	10	10 ▶허가 시 예외
		7) 주4일 미만	0	
	흡·결강 여부	8) 없음 9) 보강완료보고서 기간 내 미제출 (1회당)	10 -5	10 ▶허가 시 예외(7일이내 제출시)
	수업시간 준수	10) 준수	30	30
		11) 미준수 시 (1회당)	-10	
	성적원부 및 출석부 제출	1) 기한 내 제출 2) 미제출 (과목당)	10 -5	20 ▶
	성적정정 학점분포	3) 없음 4) 정정 있음 (과목당)	10 -5	10 ▶정정기간 내에는 예외
		5) A학점 : 40%초과 없음 (과목당)	10	▶기본점수부여 후 A학점비율 초과 시 과목 당 감점 ▶정규수업과정이 아닌 교외에서 평가하는 교과목(현장실습 등) 및 해외인턴십 과정 예외
		6) A학점 : 40%초과 (과목당)	-5	
2. 성적 평가	총원율	1) 학과 재학생 총원율(%)	·	100 ▶재학생 기준일: 4.1기준 교육부 보고 자료 ※단 요청 시 재학생 총원율은 지도반별로 가능 ▶학과 재학생 총원율 · 95%이상 : 100점 · 90%이상 ~ 95%미안 : 90점 · 85%이상 ~ 90%미안 : 80점 · 80%이상 ~ 85%미안 : 60점 · 70%이상 ~ 80%미안 : 50점 · 70%미안 : 0점 ▶학과 신입생 총원율 · 95%이상 : 100점 · 90%이상 ~ 95%미안 : 90점 · 85%이상 ~ 90%미안 : 80점 · 80%이상 ~ 85%미안 : 60점 · 70%이상 ~ 80%미안 : 50점 · 70%미안 : 0점
		2) 학과 신입생 총원율(%)	·	100
		3) 신입생 모집(신설)	10	100 ▶신입생 모집총원 추천1인: 10점 (입학원서에 기재, on-line접수제외)
	점원 외 교육과정 운영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	·	50 ▶평가 당해년도 운영학과
		5)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학과	·	50 ▶평가 당해년도 운영학과
		6) 외국인 정규교육과정 운영학과	·	50 ▶평가 당해년도 운영학과
	상 담	7) 학생지도상담 (건당)	5	120 ▶상담일자 입력 건당×5점
		8) 멘토교수제 운영	10	20 ▶연 2회 기준
	실무교육	9) 국내외현장실습지도 (인원당)	2	▶현장실습 : 현장실습지도보고서 기한 내 입력시 인정 ▶임력기준 : 동계 및 하계실습, 장기현장실습
		10) 해외어학연수, 해외비전 트립, 어학교육참가	5	▶해외어학연수, 해외비전트립 : 학생인솔 ▶어학교육참가 : 외국어회화 프로그램에 80%이상 출석한 참가 교원
		11) 학생논문 지도 12) 지역규모이상 학생상훈 지도	10	20 ▶SAU EXPO 제출논문, 국내외 학술논문 제출지도 ▶외부기관의 공모과제에서 학생지도로 수상 시 수상 학생별로 인정
		13) 학생 행사 및 동아리 지도	5	▶SAU EXPO, SAU Festival의 부대행사 지도교수 ▶전체 신입생 OT, 교내동아리행사/수학·졸업여행, 학과체육대회 ▶MT, 현장견학 및 국내·외 견학
4. 교수법	교수법개발	1)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15	30 ▶연 2회 기준

※ 교육업적 점수 산정 기준

- ▶소수점 처리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점수 부여
- ▶건수(횟수) 처리 기준 : 연간 누적 건수(횟수)로 기준
- ▶감점대상 평가항목의 최저 점수 : -5점

## II. 연구업적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790점)	평가기준
1. 학술 논문	1) 국제학술지	20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술지 : SCI, SSCI, A&amp;HCI에 의해 공인된 국내·외 학술지</li> </ul>
	2) 박사학위논문	200		
	3)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후보지	150		
	4) 기타 국제학술지	150		
	5) 전국규모 국내학술지	100		
	6) 기타논문집	80		
2. 학술 저서	1) 국제전문학술서	20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년도 발행기준</li> <li>▶ 저자출판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경우</li> </ul>
	2) 국내전문학술서, 대학교재 (ISBN 부여)	150		
	3) 대학교재용 번역서 (ISBN 부여, 250Page 이상)	150		
	4) 1·2종 도서 (초/중/고)	80		
	5) 편저 (ISBN 부여)	80		
	6) 저서개정판 (ISBN 부여)	50		
	7) 전공 관련 저서 및 기타 번역서 (ISBN부여)	50		
3. 학술 발표	1) 국제학술회의 초청강연, 학술대회 논문 및 포스터발표 (외국어표기)	1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학회 동일일자의 학술대회에 발표, 토론, 좌장 등 중복 참석하는 경우 모두 인정</li> </ul>
	2) 국내학술회의 초청강연 및 학술대회 논문(등재지 및 후보지)	80		
	3) 전국규모학술정기간행물 논문 및 작품 게재	80		
	4) 교육부주최 교수·학습연구대회발표	80		
	5) 국내·외 기타 학술관련 주제발표	50		
	6) 학술관련 사회, 토론자, 좌장, 통역	30		
	7) 전공 관련 기고 (진단, 총설, 평론, 해설, 분석 등)	30		
	8) 전국규모 정기간행물 기고	10		
4. 연구 보고서	1)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 제출일 기준</li> <li>▶ 인정비율 - 연구책임자 : 점수×2/(n+1) - 공동연구원 : 점수×1/(n+1) (n:전체 연구자수로 연구보조원은 제외)</li> <li>▶ 외부기관의 연구비에 의해서 작성된 최종연구결과보고서로서 학술논문이나 학술저서로 발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한함</li> <li>▶ 다년간 연구과제는 1년 단위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 후 인정</li> </ul>
	2) 공공기관	40		
	3) 기업체 등 교외연구보고서	30		
	4) 교내연구보고서	30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790점)	평가기준
5.특허	1) 국제발명특허 및 지적소유권	30	30	▶당해년도 취득한 경우에 한함
	2) 국내발명특허 및 지적소유권	30		
	3) 정부기관에 공인된 신기술 등 (건기법 관련)	20		
	4) 특허출원(국제/국내)	10		
	4) 실용신안, 의장등록	5		
6.자 격	상위자격증 (기술사,건축사,변호사,공인회계사,변 리사,관세사 등)	20	20	▶기타 자격증 : 심의 후 신규취득 시에만 인정
7.연수	1) 교육관련 연수	7일 이상	20	▶교육관련 연수 : 본 대학 및 교육부, 공 공기관 및 학회 등의 공인된 연수 ▶교육관련 연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총일수를 기준 ▶국내 및 국외 학술발표회 참석은 건당 가산 ▶국내·외의 학술발표(논문, 토론자, 사회 등)로 참가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며, 교내지원연수 및 학회관련 임원회의 참 가는 제외
		4일 이상	10	
		3일 이하	5	
	2) 국외 학술발표회 참석	5		
	3) 국내 전국규모학술 발표회 참석	2		
8.상 훈	전공관련 학술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학술분야 수상	10	10	▶전공 관련 학술분야 수상에 한함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790점)	평가기준
9.전시회	1) 국제전, 미술대전, 전국 규모 현상 공모전 특선 이상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종류의 등급 결정은 별도의 심사에 의함</li> <li>▶ 출업 작품전은 작품집 또는 CD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li> <li>▶ 전공 해당 학과에 한함</li> </ul>
	2) 국제 저명 미술관 및 단체 초대 개인 전시회	200		
	3) 개인전	200		
	4) 국제전, 미술대전, 전국 규모 현상 공모전 입선	100		
	5) 지역 규모 공모전 특선	100		
	6) 공인된 단체의 공모전 특선	100		
	7) 공인된 단체의 회원전 및 공모전 입선	70		
	8) 공인된 기획전	70		
	9)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70		
	10) 지역 규모 공모전 입선	50		
	11) 각종 회원전	50		
	12) 출업 작품전	40		
10.무용/체육	1) 공인된 무용/체육 단체에서 개인 연구 발표	1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해당 학과에 한함</li> </ul>
	2) 국제 대회 경기 출전 (감독/코치로 참가)	A. 3위 입상		
		B. 예선통과		
		C. 참가		
	3) 전국 대회 입상 (감독/코치로 참가)	A. 3위 입상		
		B. 예선통과		
		C. 참가		
	4) 지역 규모 대회 입상 (감독/코치로 참가)	A. 결승 진출		
		B. 3위 입상		
		C. 예선통과		
	5) 국제 공인 각종 대회	심판(심사위원)		
	6) 국내 공인 각종 대회	심판(심사위원)		
11.음악 (성악)	1) 그랜드 오페라 주연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해당 학과에 한함</li> </ul>
	2) 그랜드 오페라 조연	150		
	3) 독창회	200		
	4) 독창 협연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5) 2인 발표회	100		
	6) 3인 이상 발표회	50		
	1) 1인 작곡 발표회	200		
	2) 관현악곡, 협주곡, 오페라 및 발레(1막)	150		
12.음악 (작곡)	3) 오페라, 발레(2막 이상)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해당 학과에 한함</li> </ul>
	4) 10인 이상을 위한 실내 악곡	100		
	5) 5인 이상 9인 이하의 실내 악곡	70		
	6) 2인 이상 4인 이하의 실내 악곡	50		
	7) 합창곡, 독주곡, 가곡	50		
	8) 영상 음악, 컴퓨터 음악, 멀티미디어 음악	50		
	1) 대중 음악 디지털 음원 창작	200		
	2) 단독 공연 및 콘서트 개최	150		
13.음악 (대중 음악)	3) 대중 음악 공연 (국내 100석 규모 이상)	200		

## ■ 연구업적의 주석

- ▶ 국제학술회의 :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연제를 발표하는 학술회의
- ▶ 전국규모 국내 학술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의 학술지
- ▶ ‘공인된’은 주최가 사단법인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 기타 심의에 의한 자격증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전공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해당 법률에 의해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 (민간 자격증 제외)
- ▶ 모든 평가 내용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시회 등을 실사를 통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 국제학회 : 3개국 이상의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학회로
  - ①심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학회 학술지를 최근 3년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 ②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총수가 100인 이상이고 전임강사 이상인 회원의 분포가 50% 이상인 학회를 의미함.

### III. 봉사업적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360점)	평가기준
1.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2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직 시 1개만 인정</li> <li>▶총장이 임명한 위원 (임명장, 공문, 전자문서 등)</li> </ul>
	대학 보직업무 수행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총장, 보직처장 : 100점</li> <li>▶평생교육원장, 국제교류협력원장 : 90점</li> <li>▶센터장, 도서관장, 평생교육원 부원장 : 70점</li> <li>▶학과장 : 50점</li> <li>▶방송국 및 학보사 주간 : 30점</li> </ul>
2.교외	1)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4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방송출연 : 일간신문에 칼럼 등 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공중파)에 사회자, 토론자, 출연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단순 기사화는 제외</li> </ul>
	2) 국제학회협회, 임원 및 위원			
	3) 국제학술 논문 심사위원			
	4) 중앙일간지투고 및 중앙방송출연			
	5) 전국 및 중앙정부 봉사활동관련 공훈 및 수상			
	6) 국내학회임원 및 위원 (등재후보지이상 보유)			
	7) 국내공모전 심사위원			
	8) 국내학회협회, 임원 및 위원 (기타)			
	9)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 학술논문심사위원			
	10) 국가고시, 공무원임용, 자격증 이상 출제/평가위원			
	1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 위원			
	12) 전국 및 광역시규모 전문학회(협의회) 임원 및 위원			
	13) 지방일간지투고 및 지방방송출연			
	14)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 등의 공훈 및 수상			
	15) 전공관련 비영리사회봉사단체 임원 및 위원			
	16) 정기간행물 게재 및 기고 (비전공에 한함)			
	17)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위촉 강사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360점)	평가기준
3. 대학 발전	1) 대학발전기여 (대학, 학과홍보/아이디어 청출)	2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가산점 부여</li> <li>▶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심의 후 결정</li> </ul>
	2) 대학발전 프로젝트 및 국고 지원 사업 수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점 부여</li> <li>▶ 행정부서에서 시행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발전프로젝트 (기획처)</li> <li>- 국고지원사업 (산학협력단)</li> </ul> </li> </ul>
	3) 신입생 유치 및 대학 홍보를 위한 활동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생 유치 및 학교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li> <li>▶ 홍보(방문)지원요청서 및 홍보(방문)결과보고서 제출의 경우</li> <li>▶ 교내 입시관련회의 및 행사에 2시간 이상 참석</li> <li>▶ 정원 외(위탁 및 전공심화 등) 입학원서에 추천인으로 기록된 건당</li> <li>▶ 대외협력처에서 요청한 입시 관련 학과회의 및 자료제출</li> </ul>
	4) 대학발전기금 유치 (기부금)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은 10만원당. 단, 학과로 유치한 경우 에는 1/전임교원(교원업적평가 대상자)</li> <li>▶ 기획처에 신고된 것에 한함</li> </ul>
4. 기타	1) 교내 표창 및 포상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봉사활동</li> <li>▶ 봉사증명서 제출 시 건당 가산점을 부여하 며, 동일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횟수에 관 계없이 1건으로 인정</li> </ul>
	2) 교내 정기간행물 투고 (대학 간행물)	10		
	3) 사회봉사활동 (비영리기관)	5		

## V-1. 산학협력

(연구 Track)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830점)	평가기준	
1. 취·창업	1) 학과 취업률(%)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률 기준일 : 전년도 12.31 기준 정보공시 자료기준. 단, 성인학습자는 산출내역에서 제외</li> <li>▶ 학과 취업률로 점수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이상 : 200점</li> <li>• 70%이상 ~ 75%미만 : 150점</li> <li>• 65%이상 ~ 70%미만 : 100점</li> <li>• 60%이상 ~ 65%미만 : 50점</li> <li>• 60%미만 : 0점</li> </ul> </li> </ul>	
	2) 취업 추천 후 취업 시 (취업 인원 당)	1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에서 취업추천 확인서 발부받은 경우에 한함</li> <li>▶ 취업추천 기준일: 전년도 1.1~12.31 신고자료</li> <li>▶ 공동 취업 추천 후 취업 시 1/n</li> </ul>	
	3) 취업자 책임교수제 업체 방문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건수(업체당)별로 점수를 부여</li> <li>▶ 취업자 책임교수제 방문보고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li>▶ 기준일 : 당해연도 1.1~12.31</li> </ul>	
	4) 외부산업체의 취업설명회 개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설명회는 1회 3개 참가업체 이내에 한해 인정</li> <li>▶ 취업설명회 개최 기준일 : 전년도 1.1~12.31 신고자료</li> <li>▶ 공동 개최 시 1/n</li> </ul>	
	5) 학생 창업 지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li>▶ 공동 창업(지도) 시 1/n</li> </ul>	
2. 산학 협동	1)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닥터사업(TP)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 건수별로 점수를 부여</li> <li>▶ 대외협력처에 신고된 협약이거나 공공 기관 주관 사업에 의해 실시된 것에 한함 (단, 현장실습업체 협약은 협약 후 현장실습 수행 시 인정)</li> </ul>	
	2) 가족회사협약, 현장실습업체협약, 1교수 다사제 업체 방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교수 다사제 업체 방문은 업체당 연 3회 까지 인정</li> <li>▶ 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제출에 한함</li> <li>▶ 기준일 : 당해년도 1.1~12.31</li> </ul>	
	3) 학과산학협력위원회(가족회사 협의회) 개최 및 참석	5			
	4) 기술이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이전수익 1천만원 이상 (건당)</li> </ul>	
3. 산업체 맞춤 교육 운영	1) 산업체 계약학과 운영 및 강의	2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처에 신고된 과정운영 및 강의 참여 전임교원 1과목당 20점</li> <li>▶ 캠페인 디자인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ul>	
	2) 정규과정 외 교육운영 및 강의 외부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공공기관/지자체 등)				
	3) 캠페인 디자인 지도 (산업체 연계)				
4. 과제 수행	1) 사업계획서 제출	1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제출하였으나 사업선정이 안된 경우 제출일 기준 (단, TFT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li> <li>▶ 점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 : 100%</li> <li>- 참여연구원 : 30%</li> </ul> </li> <li>▶ 연구비총액과 OH금액 중 유리한쪽 적용</li> <li>▶ 적용시점 : 입금시점기준(산학협력단)</li> <li>▶ 제외 : 기술지도, 산업체자문은 2번 항목의 산학협동에서 평가</li> </ul>	
	2) 연구비총액 500만원당	40			
	3) 오버헤드 30만원당	20			
5. 장학금, 기자재 유 치	장학금 및 기자재유치 등	1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 100만원당</li> <li>▶ 기자재 및 소모품, 소프트웨어 100만원당</li> <li>▶ 해당 행정부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함</li> <li>- 장학금, 기자재 및 소모품 (교무처)</li> </ul>	
6. 산업체 연수	산업체연수	30일 이상 10일 이상 9일 이하	30 20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연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총 일수를 기준하며,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ul>

## V-2. 산학협력

(산학협력 Track)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최대인정 점수 (1,200점)	평가기준
1. 취·창업	1) 학과 취업률(%)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률 기준일 : 전년도 12.31 기준 정보공시 자료기준. 단, 성인학습자는 산출내역에서 제외</li> <li>▶학과 취업률로 점수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이상 : 200점</li> <li>· 70%이상 ~ 75%미만 : 150점</li> <li>· 65%이상 ~ 70%미만 : 100점</li> <li>· 60%이상 ~ 65%미만 : 50점</li> <li>· 60%미만 : 0점</li> </ul> </li> </ul>
	2) 취업 추천 후 취업 시 (취업 인원 당)	1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에서 취업추천 확인서 발부받은 경우에 한함</li> <li>▶취업추천 기준일: 전년도 1.1~12.31 신고자료</li> <li>▶공동 취업 추천 후 취업 시 1/n</li> </ul>
	3) 취업자책임교수제 업체 방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건수(업체당)별로 점수를 부여</li> <li>▶취업자 책임교수제 방문보고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li>▶기준일 : 당해년도 1.1~12.31</li> </ul>
	4) 외부산업체의 취업설명회 개최	3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설명회는 1회 3개 참가업체 이내에 한해 인정</li> <li>▶취업설명회 개최 기준일 : 전년도 1.1~12.31 신고자료</li> <li>▶공동 개최 시 1/n</li> </ul>
	5) 학생 창업 지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li>▶공동 창업(지도) 시 1/n</li> </ul>
2. 산학협동	1)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닥터사업 (T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건수별로 점수를 부여</li> </ul>
	2) 가족회사협약, 현장실습업체협약, 1교수 다사제 업체 방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협력처에 신고된 협약이거나 공공기관 주관 사업에 의해 실시된 것에 한함 (단, 현장실습업체 협약은 협약 후 현장실습 수행 시 인정)</li> </ul>
	3) 학과산학협력위원회(가족회사 협의회) 개최 및 참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 다사제 업체 방문은 업체당 연 3회까지 인정</li> <li>▶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제출에 한함</li> <li>▶기준일 : 당해연도 1.1~12.31</li> </ul>
	4) 기술이전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이전수익 1천만원 이상 (건당)</li> </ul>
3. 산업체 맞춤 교육 운영	1) 산업체 계약학과 운영 및 강의			
	2) 정규과정 외 교육운영 및 강의 외부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공공기관/지자체 등)	2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협력처에 신고된 과정운영 및 강의 참여 전임교원 1과목당 20점</li> </ul>
	3) 캡스톤 디자인 지도 (산업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캡스톤 디자인 지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ul>
4. 과제수행	1) 사업계획서 제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 제출하였으나 사업선정이 안 된 경우 제출일 기준 (단, TFT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li> </ul>
	2) 연구비총액 500만원당	4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 : 100%</li> <li>- 참여연구원 : 30%</li> </ul> </li> </ul>
	3) 오버헤드 30만원당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총액과 OH금액 중 유리한쪽 적용</li> <li>▶적용시점 : 입금시점기준(산학협력단)</li> <li>▶제외 : 기술지도, 산업체자문은 2번 항목의 산학협동에서 평가</li> </ul>
5. 장학금, 기자재유치	장학금 및 기자재유치 등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 100만원당</li> <li>▶기자재 및 소모품, 소프트웨어 100만원당</li> <li>▶해당 행정부서에 신고된 경우에 한함</li> <li>-장학금, 기자재 및 소모품(교무처)</li> </ul>
6. 산업체 연수	산업체연수	30일 이상 10일 이상 9일 이하	30 2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체연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총 일수를 기준하며,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li> </ul>

## VII. 가점영역

구 분	평 가 항 목	최대인정점수 (100점)	평가기준
가 점	대학발전기여도	100	▶대학 사업 추진 참여 실적, 대학정책 기여도, 대학 행정 업무 기여도, 학과 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평가 A(100), B(80), C(60), D(40), E(20)